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회운영위원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정보위원회 선임〉

■ 김준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152호)

2024. 8.

국회운영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상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준형 · 한정애 · 정춘생 · 서왕진 · 박은정 · 이해민
신장식 · 박지원 · 이준석 · 한창민 · 전종덕 · 천하람
조 국 · 용혜인 · 김재원 · 정혜경 · 윤종오 · 강경숙
이주영 · 김종민 · 황운하 · 차규근 · 김선민 의원(23인)

2. 제 안 일 : 2024. 7. 23.

3. 회 부 일 : 2024. 7. 24.

※ 의안번호 : 2152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. 또한 국회법 제·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에서 교섭단체

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
않음.

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
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
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
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).

Ⅲ. 검토의견

현행법에 따르면, 정보위원회의 위원선임은 다른 상임위원의 선임방법¹⁾과는 달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하고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,

개정안은 현행 정보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정보위원회 위원도 통상의 상임위원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임.

[표-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생략)	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	② ----- 제48조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·② (생략)	제48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	<삭제>

1) 「국회법」 제48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,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.

<u>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</u> ④ · ⑤ (생략) ⑥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</u>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,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. 다만,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제1항, 제2항 및 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◦ 시행일: 공포 후 즉시 시행 ◦ 적용례: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	

현행법상 정보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규정은 제14대국회 국회법 개정(1994. 6. 28.) 시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면서 도입된 것으로, 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법제사범 · 정무 · 재정경제 · 통일외교통상 · 행정자치 · 국방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(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현행과 같이 당연직 위원)하도록 하였으나,

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(2000. 2. 16.)으로 위와 같은 6개 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없애고, 현행과 같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개정안은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,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

정보위원회의 위원선임 방식을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, 이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현행법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선임 뿐만 아니라 위원 정수²⁾, 예결위의 예·결산 심사 대체³⁾, 소속 공무원의 필수적 신원조사 의뢰규정⁴⁾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,

이러한 현행법이 마련한 특례규정의 취지, 국가기밀 보호,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통제 및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016

2) 「국회법」 제38조(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)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(定數)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.

3) 「국회법」 제84조(예산안·결산의 회부 및 심사)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,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·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.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.

4) 「국회법」 제54조의2(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)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.

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(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※ 제54조의2제1항 본문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(2022. 1. 27. 선고 2018헌마1162 결정).